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시흥시</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케이씨에이컨소시엄</td><td>평가 기간</td><td>2026.04.01 ~ 2026.04.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5">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td><td>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 colspan="2">2026. 1. ~ 2026. 12</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 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colspan="2" rowspan="2">102,650,562천원 (VAT 포함)</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colspan="2">☐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5"></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개인정보파일 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지방세 자동이체 신청및해지</td><td>12,175</td><td>이름,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td><td>행정안전부</td><td>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td></tr>
<tr><td>지방세 과오납 대상자</td><td>470,455</td><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td><td>행정안전부, 시금고은행</td><td>과오납반환 대상자의 신상정보관리</td></tr>
<tr><td>지방세 납세자관리</td><td>685,568</td><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td><td>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정부24, 대국민), 관세청</td><td>지방세 납세자 정보관리</td></tr>
<tr><td>지방세수납 관리대장</td><td>1,152,560</td><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td><td>금융결제원</td><td>지방세수납관리</td></tr>
<tr><td>자동차세 부과대장</td><td>656,963</td><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td><td>자동차세부과관리</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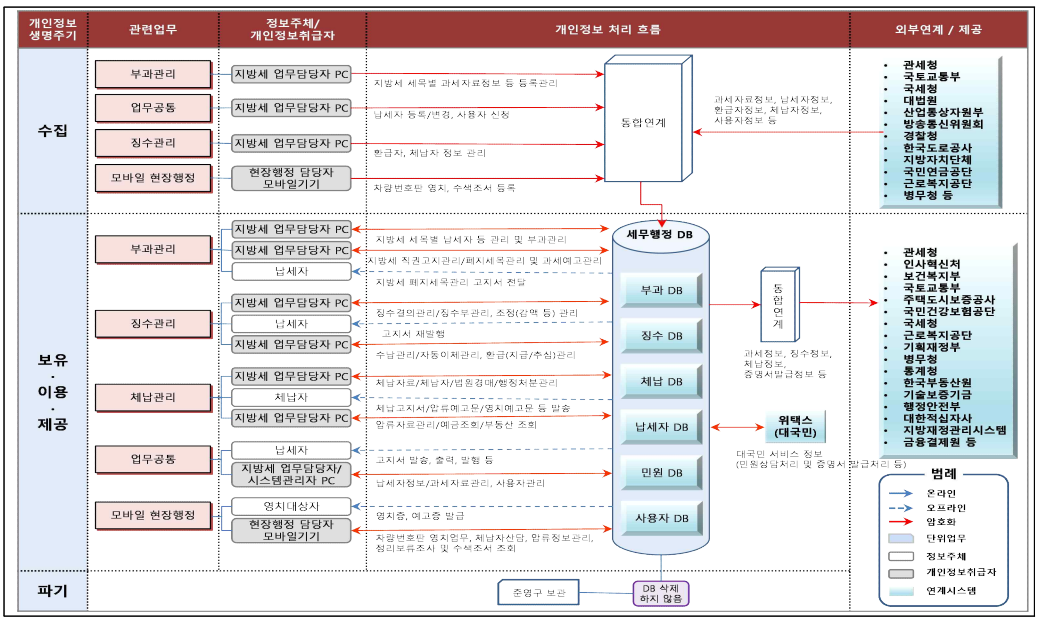
	재산세 과세대장	795,227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기획재정부, 병무청,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기술보증기금,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대장(토지.건물대장)
	주민세 사업소분 관리	273,763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한적십자사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관리
	주민세관리	1,194,613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E-Mail, 주민등록번호	대한적십자사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관리 대장	56,303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특별징수분 부과를 위한 정비 자료
	지방소득세 부과정보	278,000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지방소득세 부과관리
	등록면허세 관리	432,869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
	지방세 제증명 관리	341,229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행정안전부, 서민금융진흥원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지방세 체납자 총괄 관리	83,730	이름, 주민등록번호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지방세 체납자 관리
	지방세 결손관리	123,935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 법무부	지방세 결손관련 자료관리
	지방세 압류대장	275,414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차량공매 관리	6,324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 법무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위해 차량공매
	체납자 관리(기동팀)	55,399	이름, 주민등록번호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e-하나로민원/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자 관리/징수/자동차공매
	취득세 감면	375,796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취득세 감면 검토의 효율성
	취득세 총괄 관리	223,341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 취득세 부과 관리 목적

	취득세관리	281,934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취득세 부과자료 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시흥시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차세대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7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27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table>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u>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u>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제135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u>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u>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최소한의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방만한 운영으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우려가 있음(3.2.1)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3.3.1)
- 출력, 복사물에 대하여 보호대책이 적용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이 유출될 경우 누가, 언제, 무슨 정보를 출력했는지에 대한 책임 추적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4.8.3)</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 보유기간 산정(3.2.1)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산정 근거에 따른 준수 필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개(3.3.1)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보유기간 산정(4.8.3) : 출력물에 출력시간을 포함하여 출력·복사물의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9개의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의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3개 항목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산정 근거에 따른 준수 필요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필요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7개 항목을 제외하고 19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출력물에 출력시간을 포함하여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td></tr>
</table>